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96
----------	-----

제출연월일 : 2022. 3. 10.

제안자 : 남양주시장

1. 개정이유

- 기존 개정으로 인한 삭제된 조항 및 장 등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 제고
- 선생의 인문사상을 널리 알리며, 문화제 인지도 제고 위한 홍보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가. 기존개정으로 인해 삭제된 장, 조항을 정비하고, 용어 및 문구 등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규정 (안 제1조 ~ 제15조, 제17조)
- 나. 정약용문화제의 홍보 등에 관한 근거 신설(안 제16조)
 - 안내 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품 등 제작·배부
 - 정약용 선생 이미지 홍보 위한 기념품 판매소 위탁 설치·운영

3.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붙임
- 나. 입법예고
 - 1) 예고기간: 2022. 1. 27. ~ 2022. 2. 16.(20일간)
 - 2) 예고결과: 의견없음
- 다. 부서협의
 - 1) 협의기간: 2022. 1. 17. ~ 2022. 1. 21.(5일간)
 - 2)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여성아동과): 개선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원안동의
 - 규제심사 대상 여부(법무담당관): 규제심사 대상 아님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약용 선생의 애민사상과 실사구시 정신을 기리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사시기 및 장소) 정약용문화제는 매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소재 정약용유적지 일원에서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기와 장소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행사 내용) 정약용문화제는 정약용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기획·전시·공연·체험 등의 행사와 그 밖의 부대행사로 한다.

제2장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

제4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약용문화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약용문화제의 시기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정약용문화제의 집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상 및 수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약용문화제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기획 업무 담당 실·국장과 문화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정약용문화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언론계·문화계 등의 전문가, 주민·직능단체 대표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약용문화재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운영세칙)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시상 및 수상자의 결정

제11조 (시상) 시장은 정약용문화제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공모전이나 경연대회를 통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상장 수여와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상부문 및 수상인원) 제11조에 따른 시상부문과 수상인원은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상부문 및 수상인원 결정에 대해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심사 및 결정) 제11조에 따른 수상자는 추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상자의 결정에 대해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위탁 및 경비의 지원

제14조(위탁) 시장은 정약용문화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약용문화제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해당 연도에 한정한다.

제15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정약용문화제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홍보 등

제16조(홍보 등) ①시장은 정약용 선생의 사상과 인문정신을 널리 알리고, 효과적인 홍보와 정약용문화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안내책자 등 다양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약용 선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미지를 다각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기념품 판매소를 위탁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양주시 포상 조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입법예고 결과

- 남양주 GREEN으로 달린다 -



남 양 주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보고

1. 정약용과-574(2022. 1. 26.)호 관련입니다.
2.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결과를 보고합니다.
 -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1. 27.(목) ~ 2. 16.(수) / 20일간
 - 다. 입법예고 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 라. 입법예고 주요내용 : 붙임 참조
 -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바. 향후계획 : 조례규치심의회 심의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주무관	강운영	정약용컨텐츠 팀장	김선미	정약용과장	문영우	문화교육국장	전길 2022. 2. 18. 박재영
협조자	주무관	양서화	법무담당관	교육			
시행	정약용과-956			접수			
주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 시청 제1청사 문화 교육국 정약용과 (금곡동)					/ https://www.nyj.go.kr/	
전화번호	031-690-2591	팩스번호	031-690-4227		/ rivermoon777@korea.kr	/ 비공개(7)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홍보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각 장 및 조항 순서 정비, 용어 정비 등으로 개정 후에도 현저하게 추가되는 예산 재정 수반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 1억원 미만으로

매년 세출, 세입 예산에 대한 현저하게 추가되는 예산 증감사항은 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정약용과장 문명우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남양주 GREEN으로 달린다 -



남 양 주 시



수신 정약용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 (2022A경기남양004)

1. 경기도 남양주시 정약용과 - 381(2022. 1. 1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2022A경기남양004) 1부. 끝.

남 양 주 에 장 께

원장 배진취 여성아동과장 이관걸 복지국장 전일 2022. 1. 18.
이인애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1863 (2022. 1. 18.) 접수 정약용과-401 (2022. 1. 18.)

주 1228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림로16번길 95, 남양주시청 여성아 / http://www.nyj.go.kr
동과 (다산동)

전화번호 031-690-2267 팩스번호 031-690-2269 / qo7612@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경기남양004		
정책명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남양주시	
	부서명	정약용과	
	담당자명	강문영	전화번호 031-590-259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1월 1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정약용과)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관련 조항, 표현 : 없음 ✓성별특성 반영 : 해당사항 없음 ✓성별 균형 참여 : 해당사항 없음 ✓성별 통계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1월 18일

남양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배진위/031-590-2267)

정약용과장 귀하

붙임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남양주 GREEN으로 달린다 -



남 양 주 시



수신 정약용과장
(경유)

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2022-04)

정약용과-363(2022.1.17.)호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평가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관련 권고사항 반영 여부
- 평가 결과 : 원안동의

※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남양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10조(재평가 절차)에 따라 3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칙 제11조(평가결과의 반영)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붙임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감 사

주무관 이인섭 청원유리팀장 심현아 감사관 전일 2022. 1. 18.
홍준기

협조자

시행: 감사관-728 (2022. 1. 18.) 접수: 정약용과-395 (2022. 1. 18.)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감사관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4719 팩스번호 031-590-6847 / zmxncbv3@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 리 번 호	2022-남양주-04		
자 치 법 규 명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평 가 담 당 부 서	감사관	평 가 담 당 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이인섭
입 안 부 서	정약용과	입 안 담 당 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강문영
평 가 결 과 통 지 일	2022. 1. 18.		
통 보 내 역	원 안 동 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p>2022년 1월 18일</p> <p>부패영향평가 평가담당 감사관</p> <p>(담당자 / 연락처 : 이인섭 / 031-590-4719)</p>			
<p>정약용과장 귀하</p>			

- 남양주 GREEN으로 달린다 -



남 양 주 시



수신 정약용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회신(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안)

1. 정약용과-362(2022. 1. 17.)호와 관련입니다.
2. 「남양주시 정약용문화제 조례」 전부개정안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개최시기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변경 등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및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행정규제(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심사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절차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관련세경 2010. 1. 25.]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예비심사) ①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과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개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끝.

법 무 담 황 관 영

주무관 **김경아** 학극형성팀장 **이성주** 법무담당관 **양기영** 전결 2022. 1. 18.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06 (2022. 1. 18.) 접수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법무담당관 / <https://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7312 팩스번호 031-590-2900 / huijijn74@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도시 남양주! -